- 2025 회계연도 -

세입 · 세출 예산(안) 검토보고

(도시관리국 소관)

2024. 11. 21.

전문위원 정 진 만

1. 제안이유

○ 2024. 11. 7.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・특별회계 세입・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세입현황(부서별 현황)

□ 회계별 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2025년 예산(안)	2024년 예산	전년대비 증(△)감		비 고
계	3,390,215	3,180,597	209,618	6.59%	
일반회계	2,414,679	2,411,465	3,214	0.13%	
특별회계	975,536	769,132	206,404	26.84%	

□ 부서별(일반회계) (단위 : 천원)

과 명	2025년 예산(안)	2024년 예산	전년대비 증(△)감		비고
주택정책과	1,215,884	1,225,011	△9,127	△0.75%	
주거정비과	800	1,000	△200	△20%	
도시계획과	0	0	0	0	
건 축 과	116,310	140,942	△24,632	△17.48%	
공원녹지과	1,081,685	1,044,512	37,173	3.56%	

▢ **부서별(특별회계)** (단위 : 천원)

과 명	2025년 예산(안)	2024년 예산	전년대비 증(△)감		비고
주택정책과	415,115	387,388	27,727	7.16%	
주거정비과	200	0	200	순증	
건 축 과	560,221	381,744	178,477	46.75%	

❑ **세입 검토의견**

▢ **도시관리국**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6.59%(2억961만원) 증액된 33억9,021만원(일반회계 24억1,467만원, 특별회계 9억7,553만원)으로 편성되었으며,

▢ **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**

○ **주택정책과는** 금년대비 △0.75%(912만원) 감액된 12억1,588만원으로, 주요내용은

- 무단증축 이행강제금으로 390만원 증액된 11억8,950만원,
- 시비보조금으로 △1,302만원 감액된 2,638만원(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 300만원→300만원,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,766만원→1,538만원, 공동주택 외부전문가 실태조사 수당 1,875만원→800만원)임

○ **주거정비과**는 금년대비 △20%(20만원) 감액된 80만원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임.

○ **도시계획과** 세입은 없으며,

○ **건축과**는 금년대비 △17.48%(2,463만원) 감액된 1억1,631만원으로, 주요내용은

-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△2,569만원 감액된 1억415만원,
- 건축법, 건축물관리법,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△106만원 감액된 1,215만원임.

○ **공원녹지과**는 금년대비 3.56%(3,717만원)증액된 10억8,168만원으로, 주요내용은

- 국고보조금인 숲가꾸기사업, 일반 병해충 방재 등으로 △708만원 감액된 1억482만원,
- 도시공원유지관리(6억8,367만원), 수목식재 사후관리(1억9,896만원) 등 시비보조금으로 3,876만원 증액된 9억2,046만원 등임

▢ **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**으로

○ **주택정책과는** 금년대비 7.16%(2,772만원) 증액된 4억1,511만원으로, 주요내용은,

- 무단증축 이행강제금으로 97만원 증액된 2억9,737만원
- 지난연도 수입으로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2,675만원 증액된 1억1,774만원 등임

○ **주거정비과는**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20만원 순증하였음

○ **건축과는** 금년대비 46.75%(1억7,847만원) 증액된 5억6,022만원으로, 주요내용은,

■ 건축안전특별회계로

- 공공예금이자수입 1,530만원(178만원 증액)
-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,062만원(△243만원 감액)
- 지난연도 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,100만원(624만원 증액)
-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9,054만원 증액된 3억58만원 등임.

■ 주차장특별회계로

- 부설주차장 위반 과징금으로 250만원,
- 부설주차장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△122만원 감액된 3,902만원,
-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부담금으로 △657만원 감액된 1억244만원,
- 지난연도 수입(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)으로 △927만원 감액된 1,270만원 등임

▣ 세 출

▢ 회계별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2025년 예산(안)	2024년 예산	전년대비 증(△)감		비고
계	21,730,157	16,210,228	5,519,929	34.05%	
일 반 회 계	20,917,336	15,621,463	5,295,873	33.90%	
특 별 회 계	812,821	588,765	224,056	38.06%	

▢ 부서별(일반회계)

(단위 : 천원)

과 명	2025년 예산(안)	2024년 예산	전년대비 증(△)감		비고
주택정책과	1,997,915	1,854,336	143,579	7.74%	
주거정비과	75,033	172,851	△97,818	△56.59%	
도시계획과	521,638	246,284	275,354	111.80%	
건 축 과	481,218	590,384	△109,166	△18.49%	
공원녹지과	17,841,532	12,757,608	5,083,924	39.85%	

▢ 부서별(특별회계)

(단위 : 천원)

과 명	2025년 예산(안)	2024년 예산	전년대비 증(△)감		비고
건 축 과	812,821	588,765	224,056	38.06%	

❑ 세출 검토의견

▢ **도시관리국**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34.05%(55억1,992만원) 증액된 217억3,015만원(일반회계 209억1,733만원, 특별회계 8억1,282만원)으로 편성되었으며,

▢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

◯ **주택정책과**는 금년대비 7.74%(1억4,357만원) 증액된 19억9,79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
■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례집 제작 500만원과 **전세사기 피해 지원**[1]으로 4,690만원이 신규 편성됨.

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(시설보수 등)으로 2억원이 증액된 8억원,

---

1) **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**
[시행 2024. 3. 14., 2024. 3. 14., 제정]

제5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.
1.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
2.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
3. 안전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)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1.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2.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
3.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월세 지원

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,

-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무관리비로 △2,239만원 감액된 3,648만원으로, 감액 사유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△379만원 감액된 2,56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지난연도 편성되었던 ‘제3종시설물(D,E급) 정밀안전점검’ 2,943만원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임.
- 공동주택 실태조사로 △750만원 감액된 5,700만원으로, 주요내용은 외부전문가 실태조사 수당이 △1,250만원 감액된 5,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지난연도에 편성되었던 소통 앱 홍보물 제작 200만원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임.
- 행정운영경비는 △6,816만원 감액된 5억1,68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이는 과도한 집행잔액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 지적사항이었던 급량비와 국내여비에 80%를 적용하여 감액된 것임.

○ **주거정비과**는 금년대비 △56.59%(9,781만원) 감액된 7,503만원으로, 감액사유는 지난연도에 편성되었던 장위 재정비 해제구역 개발방향 수립 용역비 1억원이 미편성 되었기 때문이며,

■ 신규 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

- 장위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으로 38만원 증액된 2,836만원,
- 길음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원으로 38만원 증액된 772만원,
-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지원으로 62만원 증액된 896만원,
- 주택재개발바업 활성화 지원으로 80만원 증액된 1,455만원 등임.

○ **도시계획과**는 금년대비 111.80%(2억7,535만원) 증액된 5억2,163만원으로,

■ 신규 사업으로

- 성북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 2억원,
- 성북구 아동을 배려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,
-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거점시설 운영 4,172만원 등임.

■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으로 1억123만원이 감액된 것은, 지난연도 연구용역비로 자연경관지구 관리 방안 수립 용역 1억원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임.

○ **건축과**는 금년대비 △18.49%(1억916만원) 감액된 4억8,121만원으로,

■ 신규 사업으로는

- 공사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용 통신요금 63만원,
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5,000만원이며,

■ 주요 감액사업으로

-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△630만원이 감액된 것은 지난연도에 편성되었던 해체전문위원회 운영수당 630만원과 굴토전문위원회 운영수당 840만원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임.
-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으로 1,243만원 감액된 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특별검사원 수당이 5,076만원에서 4,014만원으로 △1,062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임.

○ **건축과**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8.06%(2억2,405만원) 증액된 8억1,128만원으로,

■ 신규사업으로는

-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1,599만원,
- 공공디자인 시설물 소규모 수선 575만원,
- 제2차 **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**[2] 용역비 2억원 등이며,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 2억1,014만원이 편성되었음.

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

-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으로 △1,100만원 감액된 2,200만원,
-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로 △3,500만원 감액된 1,500만원 등임

○ **공원녹지과**는 금년대비 39.85%(50억8,392만원) 증액된 178억4,153만원으로,

■ 신규 사업으로

- 개운산 “수국동산·수국길” 조성사업 4억5,000만원,
- 스마트 피트니스 파크 조성 5억원,
- 탄소정원 조성사업 11억5,000만원,

---

2)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

제**6조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)** ① 구청장은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공공디자인 진흥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
2. 공공디자인의 구축·관리 및 영역별·권역별·지역별·가로별로 종합적·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
3.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
4.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5.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
6.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정원지원센터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8,851만원,

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

-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7,764만원 증액된 6억4,907만원(시비4억 1,577만원, 구비 2억3,330만원)
- 도시공원 유지관리 중 시설비 9,600만원 증액된 8억3,000만원
- 구 관리공원 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2억1,147만원 증액된 2억8,874 만원, 시설비로 2억2,500만원 증액된 8억원,
- 마을마당·쉼터 정비 및 유지관리 1억3,512만원 증액된 8억9,679만원,
- 아동 놀 권리 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 시설비로 11억5,000만원 증액된 16억원,
- 공원조명등 유지관리로 2억5,800만원 증액된 9억3,880만원
- 산림 및 녹지유지관리 중 시설비로 5억6,000만원 증액된 5억7,540만원,
- 주민 건강을 위한 야외 헬스기구 설치로 7,800만원 증액된 1억5,000만원,
- 생태도시숲 조성으로 5,000만원 증액된 2억5,000만원,
-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로 1억원 증액된 2억원,
-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,466만원 증액된 1억5,366 만원,
- 가로변 녹지정비사업으로 2억3,000만원 증액된 4억1,000만원,
- 가로수 가지치기로 6,000만원 증액된 2억원,
- 아름다운 성북가꾸기 꽃식재사업으로 4,120만원 증액된 2억3,520만원,
- 수변여가 정원 조성 및 관리로 7,437만원 증액된 9억5,504만원 등임.

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

- 성북생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 중 생태체험관 시설 보수 정비로 1

억2,000만원 감액된 5,000만원,

- 아름다운 성북 가로경관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원 감액된 4억5,000만원,
- 수목식재 사후관리 중 시설비로 1억원 감액된 6,700만원,
- 도시농업 활성화 중 도시텃밭 정원 조성으로 1억원 감액된 2억원,
- 인력운영비(공무직 근로자보수)로 2억3,045만원 감액된 12억7,266만원이 편성되었음.

○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이 예산안은 **지방자치법 제142조**[3]와 지방재정법 제36조, 제3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--

3) **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시·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